

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

신청인	선임인 [] 해당 [] 비해당				
	사업장명				
	주소				
제품명			[] 연구개발용 [] 비연구개발용		
결과	[] 승인 [] 부분승인 [] 불승인	승인번호	※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		
세부 승인결과	신청물질		검토결과	세부 승인결과	
	대체명칭	대체 함유량	대체명칭		대체 함유량
	1.				[] 승인 [] 불승인
	2.				[] 승인 [] 불승인
3.				[] 승인 [] 불승인	
기 타		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

안내사항

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
-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